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107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현재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을 보문산공원內로 이전하여 새로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며 경건하고 시민친화적인 현충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보훈공원의 정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전보훈공원의 개방시간,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대전보훈공원은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되 필요시 보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라. 대전보훈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마.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 1. 26 ~ 2. 1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보훈공원"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200번지 일원에 소재한 영렬탑,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 공훈선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보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렬탑 및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 유지 관리
2. 6·25전쟁 유물 등 전시품의 수집 및 전시
3.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방) 공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전시관의 관람·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또는 전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행위제한) 시장은 공원에서 다른 시민의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가무 유흥 그 밖에 공원의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관리) 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비용보조) 시장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탁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2. 공익상 위탁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대전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신설 2000. 10. 13 조례 제297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규정의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대 전 보 훈 공 원 관 리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2007. 4. 13
교육사회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3. 30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3. 30

다. 상 정 일 자 :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4.12)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응)

1. 제안이유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을 보문산 공원내로 이전하여 새로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며 경건하고 시민친화적인 현충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보훈공원의 정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전보훈공원의 개방시간, 입장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대전보훈공원을 필요시 보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라. 대전보훈공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제정 조례안은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을 보문산 공원내로 이전하여 새로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며 경건하고 시민 친화적인 현충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대전보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렬탑 및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6·25전쟁 유물 등 전시품의 수집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공원을 연중 개방하되 전시관의 관람·개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하였으며,

○ 정신이상자 또는 전염병 질환자와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보훈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 해지시는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중구 사정동 200번지 일원에 영렬탑,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의 공훈선양시설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공원의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측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분석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 의 요 지 :** 생 략

Ⅴ.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